



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·건강보험 지원 안내

“미혼부 자녀 출생신고, 이렇게 하세요”

1. 신청 절차

<p>서류준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*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가능(help.scourt.go.kr - 민원안내 - 양식모음) • 첨부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친모 성명, 등록기준지,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* 본인, 지인,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-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* 유전자 검사 자료 등 -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(초)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기본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등
<p>가정법원 제출 (등록기준지·주소지관할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
<p>출생신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·군·구청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

2. 도움 받을 수 있는 곳

○ 대한법률구조공단

-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
- 지원내용 : 유전자 검사비 지원,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(신청)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
- 신청서류 : 신분증, 도장,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증빙서류*,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 사건의 첨부자료(위 신청 절차 참고)

- * ① 가구원수 확인용 :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및 세대원포함)
- ② 건강보험가입여부 확인용 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
- ③ 기준중위소득 확인용 : (건강보험가입자)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산정내역서 (건강보험미가입자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서 등

○ 미혼모·부자 거점기관(전국 17개 기관 / 한부모가족 상담전화,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)

- 지원대상 :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(在家) 미혼모·부자
* 시설입소자(보정시설수급자) 제외
- 지원내용 : 유전자 검사비 지원, 출산 및 양육지원, 교육·문화프로그램·자조모임 등 지원

“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, 건강보험 가능합니다.”

1. 복지서비스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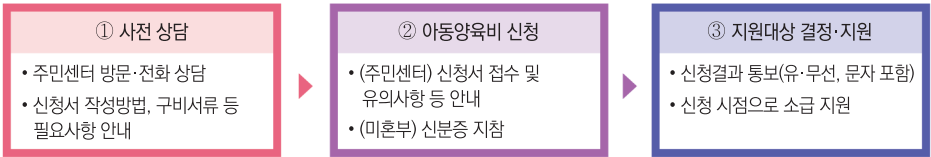
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

○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

- 유전자 검사 결과,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,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, 소득·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여 월 20만원~35만원 지원(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)
- *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책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(www.mogef.go.kr)에서 「2020년 한부모·조손가족 복지서비스」를 통해 확인 가능

(2020년 기준, 단위: 원)

저소득 한부모(중위소득 52% 이하)	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(중위소득 60% 이하)
200,000	350,000



① 사전 상담

- 주민센터 방문·전화 상담
- 신청서 작성방법, 구비서류 등 필요사항 안내

② 아동양육비 신청

- (주민센터) 신청서 접수 및 유의사항 등 안내
- (미혼부) 신분증 지참

③ 지원대상 결정·지원

- 신청결과 통보(유·무선, 문자 포함)
- 신청 시점으로 소급 지원

○ 보육료 및 양육수당

① 보육료
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~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4~47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

(2020년 기준, 단위: 원)

만 0세	만 1세	만 2세	만 3세	만 4세	만 5세
470,000	414,000	343,000	240,000	240,000	240,000

② 가정양육수당

-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령에 따라 월 10~20만원의 수당 현금 지급

*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신청기간(출생 후 60일)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, 소송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하여 소급지원 가능

(2020년 기준, 단위: 원)

12개월 미만	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
200,000	150,000	100,000

○ 아동수당

- 만 0~7세 미만 모든 아동(0~83개월까지 아동)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

*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,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

2. 건강보험

생후 1년 이내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해도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적용

- 수신자 성명란에 미혼부의 이름과 '아기'를 함께 기재(이름이 있는 경우 '이름' 기재)
- 주민등록번호란에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(3 또는 4)을 기재 후 나머지 자리는 '0'으로 기재
 - 서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·여 구분만 기재
 - 쌍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첫째아이 1, 둘째아이는 2로 기재
- 증번호는 미혼부의 증번호 12자리를 기재